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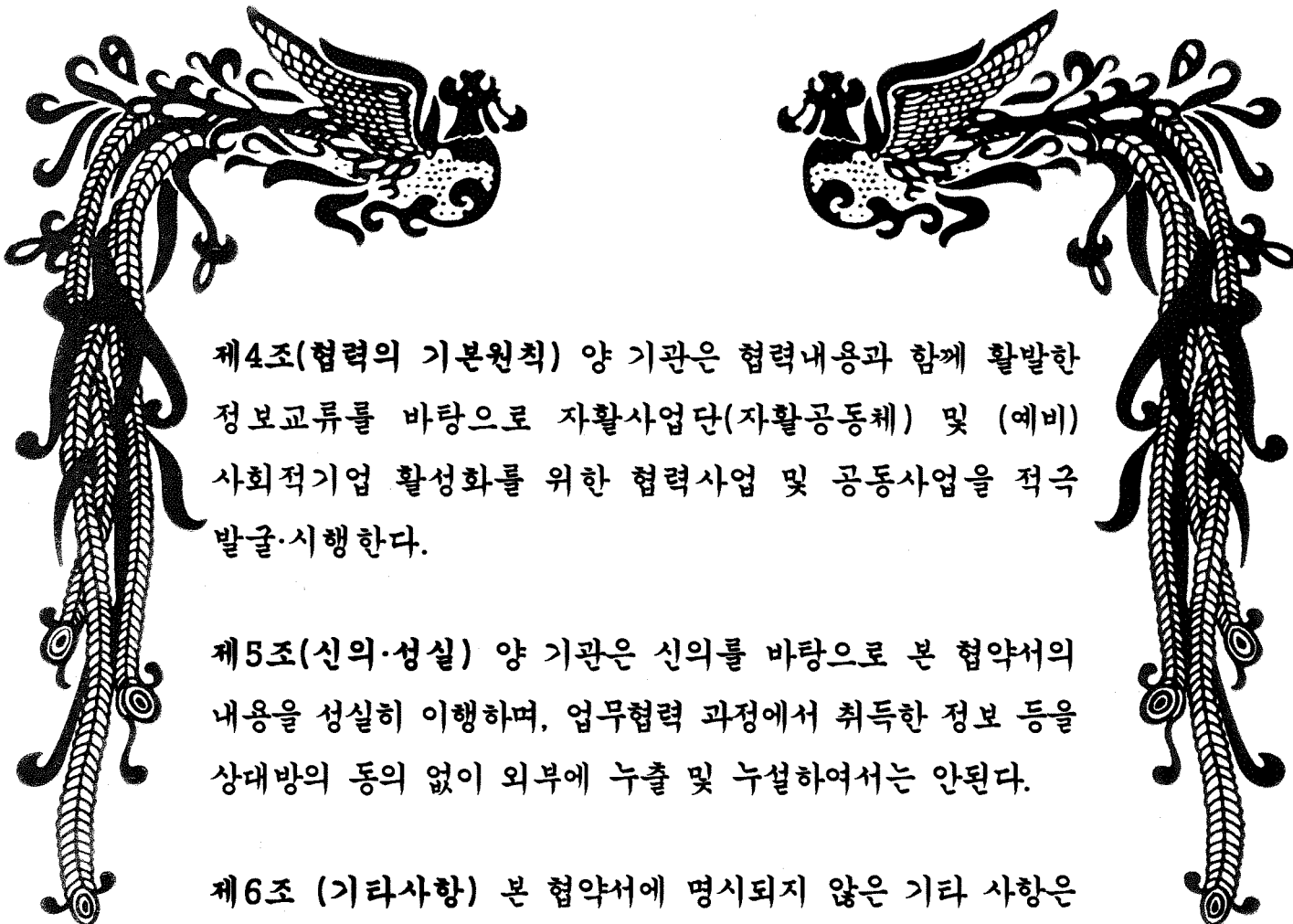
# 업무협약서

“중앙자활센터”와 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”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·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단(자활공동체)의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과 설립 및 운영의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 (이하 “협약” 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“협약”은 “중앙자활센터”와 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”의 업무상 상호공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분야) 이 “협약”에 의한 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 자활사업단(자활공동체)의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설립·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것에 한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이 “협약”에 의해 양 기관은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관할하는 자활사업단(자활공동체)의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과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. 양 기관은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및 인증 이후 각종 경영 지원서비스 제도를 안내·제공하여 (예비)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.



제4조(협력의 기본원칙) 양 기관은 협력내용과 함께 활발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자활사업단(자활공동체) 및 (예비)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·시행한다.

제5조(신의·성실)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6조 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호간 별도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기명,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11 월 21 일

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-1

경도상남시수정구대평동수정로 15



중앙자활센터  
Central Self-Sufficiency Foundation

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
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

원장 이정근

원장 류시문